

자금운용 성과평가위원회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자금운용 성과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중 확대를 통해 성과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규정 제8조에 의거 제안함

2. 주요 개정 내용

자금운용 성과평가위원회의 내부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외부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등 외부위원 비중을 확대(60→80%)함

구분	현행 (내부 2인, 외부 3인)	변경 (내부 1인, 외부 4인)
자금운용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1. 리스크관리실장 2. <u>경영지원처장</u> 3. 외부 전문가 <u>3인 이내</u>	1. 리스크관리실장 2. <삭 제> 3. 외부전문가 <u>4인 이내</u>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도착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관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7층 리스크관리실
- 담당자(이메일) : hynoh@khug.or.kr
- 전화번호 : 051-998-6865, 팩스번호 : 051-998-2250

4. 예고기간 단축사유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상황에서 원활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속한 규정 개정 필요

첨부 자금운용 성과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첨 부】

자금운용 성과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리스크관리실장 2. <u>경영지원처장</u> 3. 전결권자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 <u>3인 이내</u> 가. ~ 나. (생 략) ② ~ ⑤ (생 략)	제4조(구성) ① ----- -----. 1. ----- 2. <u>< 삭 제 ></u> 3. ----- ----- --- <u>4인 이내</u> 가. ~ 나.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건부터 적용한다.	외부위원 비중 확대로 성과평가의 투명성·공정성 강화